

◎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532호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(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-658호)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합니다.

2022년 04월 28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

대상지역		면적(k㎡)	비 고
합 계		0.77	
서울특별시	용산구	이촌동	0.05
		한강로 1가	0.05
		한강로 2가	0.04
		한강로 3가	0.61
		용산동 3가	0.01
			용산 정비창 개발사업 예정지 및 인근지역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 : 2022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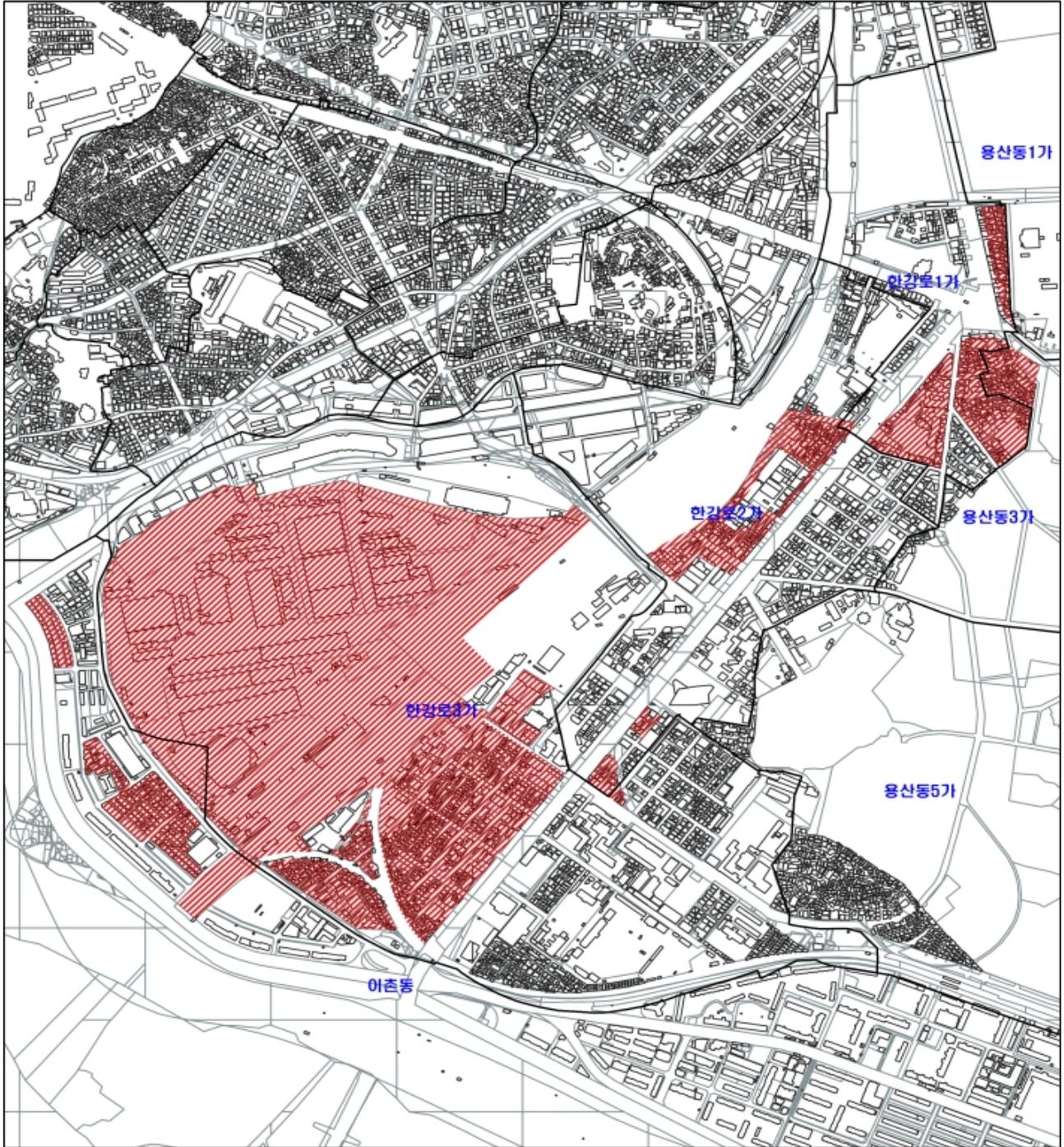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공업지역	15㎡ 초과
	녹지지역	20㎡ 초과
	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	6㎡ 초과
도시지역 외의 지역	농 지	500㎡ 초과
	임 야	1,000㎡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㎡ 초과
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: 기 지정조서 동일 생략

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: 붙임 참조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

< 서울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>



범례

- 토지거래허가구역
- 읍면동경계

Scale = 1:25000

